

작성 방법

1.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2.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.
4. ④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5. ⑤ 신청대상 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6. ⑥ “대체취득 주택”이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(종전주택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(신규주택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신규주택을 말합니다.
 “상속주택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(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)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40%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)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.
 “지방 저가주택”이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 가.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
 나.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
 다.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읍·면
 라. 경기도 연천군,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7. ⑦ 신청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8. ⑧ 신청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.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.
9. ⑨ 신청대상 주택의 취득일을 적으며,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습니다.
10. ⑩ ~ ⑫ 신청대상 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11. ⑩ 피상속인(사망자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12. ⑪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(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⑧ 공시가격란에 적은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)을 적습니다.
13. ⑫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)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“[] 수도권 ”란에 √ 표를,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“[] 비수도권 ”란에 √ 표를 합니다.

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(을)

3. 신청대상 주택 현황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⑥ 신청대상	⑦ 소재지	⑧ 공시가격	⑨ 취득일 (피상속인 사망일)	상속주택 현황			⑫ 소재지 구분
				⑩ 피상속인(사망자)		⑪ 소유 지분	
				성명	주민등록번호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☐ 대체취득 주택							☐ 수도권
☐ 상속주택							☐ 비수도권
☐ 지방 저가주택							

※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(갑)의 3. 신청대상 주택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